

학습자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No! 법정필수과정_금융(11H))

1차시. 자금세탁의 의의 및 형태에 대한 이해

*자금세탁에 대한 피해

- 시장경제원리 저해
- 금융시장의 완전성 저해
- 정부의 경제정책 통제력상실

*'자금세탁'의 유래

- 1920년대 미국에서 "알 카포네"와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세탁소에서 현금거래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불법 주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탈리아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Laundry)의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한 것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자금세탁 행위와 그 제재 법률

-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행위 -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자금세탁범죄와 탈세범죄

- 자금세탁범죄는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대상으로 한다.
- 자금세탁범죄는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최초거래에서 범죄행위가 성립한다.
- 자금세탁범죄나 탈세범죄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 또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원천을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자금세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화이트칼라형 범죄

- 자금세탁범죄는 일반적으로 발견이 어렵고, 사회적 지위나 직업상 역할을 이용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화이트칼라형 범죄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 자금세탁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리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범죄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배경

- 2001년 1월부터 외환자유화조치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불법자금의 유출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금융시스템이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처럼 위장하는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하

- 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온상이나 중개기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금융기관의 역할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화이트칼라형 범죄의 특징**

- 일반적으로 발견이 어렵다.
- 개인이나 조직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 사회적 지위나 직업상 역할을 이용한다.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한 배경으**

-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 반(反) 사회적 중대범죄의 확산 방지를 위해
- 우리나라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기본원칙**

- 개별 국가의 입법체제를 정비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 전제범죄로 선정되지 않은 범죄로부터 유래한 불법자금에 대한 세탁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 199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마약류 범죄만을 전제범죄로 규정하였다.

***전위사업체를 이용하는 수법**

- 범죄수익을 사업체의 수입으로 가장시켜 은행에 입금할 수 있는 자금세탁 수법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배경 3가지**

-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
-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 테러자금 봉쇄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대내외 신인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기관 및 국가의 평판 리스크 방지

2차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필요성 및 법률

***범죄수익규제법의 법률내용**

- 자금세탁에 대한 처벌
-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의 확대 및 보전제도의 도입
- 몰수, 추징재판의 집행 및 보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날 서명하였다.
- 2008년 12월 22일 시행하였다.
-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

***특정금융거래 보고제도**

- CTR : 동일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자기록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고
- STR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CDD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법률 관련 쟁점사항**

- 금융정보분석원 설치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
- 고객확인 의무제도의 도입

***금융정보분석원의 기능**

-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 방지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 및 교육, 홍보 실시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업무 수행
- 자금세탁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혐의거래 참고유형을 금융기관 등에 제공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법률 관련 쟁점사항**

- 법 제3조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금융기관 등이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
- 법 제8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공식적인 외교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의 FIU와 직접 자금세탁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22일 시행되었다.
- 테러자금의 개념정의, 테러자금조달의 범죄화, 테러자금의 동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동 법에 근거하여 금융회사는 테러자금조달 고객 관련 자금세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수익규제법**

-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가장을 규제한다.
- 중대범죄와 관련된 은닉행위를 규제한다.
-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한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의 방지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 및 운용한다.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범죄수익규제법과 상호보완 관계를 이룬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의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3차시.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혐의유형과 사례

*무료 와이파이 해킹

- 무선랜 공유기를 조작해 이용자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후 개인 정보를 빼내는 변종 파밍 수법

*외국환 거래 시 해외직접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자료

- 증권취득보고서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청산보고서

*레터피싱(Letter-phishing)

-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의 확인에 각별히 주의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로 문의
-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에서 그놈 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유형, 사기수법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적극 대응

*외국환거래 시 신고해야 하는 기관장

- 해외직접투자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 금전대차 - 한국은행총재
- 해외부동산 취득 - 외국환은행장

*스미싱의 대처방법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
-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
- 문자에 링크된 주소는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

4차시. 위험기반 거래 모니터링과 기록보존 및 법적 제재

***FATF의 가입요건**

- 40개 권고사항의 3년 내 이행
- 이행상황에 대한 회원국간 상호평가 약속
- 2년 이상의 observer 기간 경과

***FATF 회원국 중, 2008년도에 MOU를 체결한 국가**

- 뉴질랜드
- 마카오
- 스리랑카

***KoFIU가 특정금융 거래정보를 심사분석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검찰청
- 금융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협력 기구인 에그몽그룹(Egmont Group of FIUs of the World)의 가입 요건**

- 의심거래 보고제도 도입
- 국내의 법 또는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 보고체제 확립
- 자금세탁 관련 FIU의 설치

***특정금융 거래정보 제공 방식**

- 미국 방식은 자금세탁정보를 관리만 하고 수사기관이 직접 FIU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 유럽방식은 금융정보분석원가 접수된 의심되는 거래정보를 심사분석하여 자금세탁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만 여과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벨기에 등의 유럽 방식을 말한다.
- 한국은 특정금융 거래정보 제공의 방식을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국한하여 제공하고 있다.

5차시.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역할

***공정거래법의 주요 기능**

- 경쟁촉진
- 소비자 주권 확립
-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거래상 지위남용 -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함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이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 임원
- 종업원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

*공정거래법의 주요개념

- 사업자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 기업 집단 -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 역외적용 - 2002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제3조의2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 ①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③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 ④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자회사

-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국내회사를 지칭하는 것

*공정거래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으로 인하여 경제력이 일부 독과점기업에 집중되고 불공정한 거래 방법이 만연됨으로써, 본래 자본주의가 지향했던 시장기구 내에서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이 상실되고, 시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등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서이다.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

-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6차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이익제공의 금지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목적

- 산업합리와

- 연구, 기술개발
- 거래조건의 합리화

***공정거래법 제19조**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7차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과 위법성 심사기준

***불공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공정거래 저해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차별적 취급**

- 가격차별
- 거래조건 차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 염매'는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 고가매입'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 고가매입에서의 '통상거래가격'이라 함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 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한다.

*판매목표 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8차시. 공정거래사건 조사절차 및 심판절차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복절차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
- 행정소송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조사 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 절차의 개혁방안

- 조사절차규칙을 새롭게 제정
- 사건처리절차규칙을 개정
- 사건기록관리 규정을 새롭게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안을 위원회를 통해 합의제로 결정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건처리 3.0의 주요 내용**

- 현장조사 관행개선
- 리니언시 제도 강화
- 사건기록 관리강화

9차시.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해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로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한 이유**

-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된다.
- 금융회사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정의**

- 보험설계사도 판매자로서 금융업자에 포함된다.
- 통상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체 등의 전문소비자를 제외한 일반 개인을 금융소비자로 정의한다.
- 일반적인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특성**

-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된다.
- 피해 보상을 요구 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수반 비용이 매우 크다.
- 금융회사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그 내용**

- 소비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소비자단체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사업자단체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 종이통장 미발행 대신에 소비자에게 추가금리, 수수료 면제, 포인트 등 인센티브 부여·확대
- 소비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이통장 발행
- 종이통장 발행 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원가의 일부 부과

10차시. 불공정 약관의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불공정한 면책조항의 무효

- 금융회사 약관상 면책조항의 운용
- 금융회사 약관상 통지효력 조항의 운용

***기타 금융거래의 규제**

-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 금융상품모집인제도에 대한 규제
- 불공정 채권추심의 규제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수사항 중 '적합성'**

- 금융소비자의 구분 확인
- 금융소비자와 정보 파악
- 부적합한 상품 구매권유 금지

***CCO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

-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
-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 부서·직원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

11차시. 금융상품별 소비자 피해의 유형 및 사례

***펀드의 불완전판매사례**

- 펀드 가입 시 “가입신청서”, “고객상담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설명확인서의 기재는 담당직원이 모두 대필하고 대신 날인하였다.
- 신청인은 다른 설명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

- 입증책임은 신용카드업자가 진다.
-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대금은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이다.
- 제3자가 은행 지점을 통하여 신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